학습자료 | 2024년 산업안전보건인터넷훈련 정책 개정 공유

1. 안전보건교육규정 內 인터넷 원격교육 관련 지침 <'24. 1. 1.부터 개정 시행>

•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다른 형태의 교육(집체 등)과 동일하게 인터넷 원격교육도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과 고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

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의 배점기준 중 학습평가의 배점은 80%이다.
③ 평가의 배점기준 중 학습진도율은 20%이다.
④ 이수 기준은 총득점은 70%이상이다.

2. 안전보건교육의 과목별 최소 학습진도율은 **90%**이다.

3. 과목별 평가에서 진도 : 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 80%**이다.

4. 과목별 평가에서 과목별 수료의 최저 점수는 **70점**이다.

5.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에서 정한 교육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대리수강은 금지된다.
②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은 금지한다.
③ 순차학습을 통하여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빨리감기 작동이 금지된다.
④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6. 인터넷 원격교육의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 인증
② 과목별 진도율 90% 이상
③ 평가 응시
④ 총점 70점 이상이 수료 조건이다.

7. 인터넷 교육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교육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④ 평가는 학습평가, 과제평가, 학습진도율 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8. 인터넷 교육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② 과목별 진도율 90%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다.
③ 과목별 평가에서 7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④ 불합격자는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9.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채용시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③ 판매업무 외의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④ 신규 채용시 교육은 8시간 이상

11. 적법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에는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 사업주 자체 교육 등이 있다. **근로자 자율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학습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½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2.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3.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부의무란?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4.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주요 절차 -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으로 **일반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공무원, 법인, 사업주로 **재해를 일으킨 해당 작업의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③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④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년이상 발생한 경우

5.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④ 중대시민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

6.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7.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중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8.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종사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된다.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종사자에 사업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9.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된다.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 **관리소장, 관리반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10.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의 조치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중대시민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④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의 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법무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26일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습자료	위험성평가지침 조문 읽기

위험성평가 조문 읽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
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 이렇게 하세요!

- **Who 누가**

- 사업주의 책임 하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When 언제**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Where 어디에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 **What 무엇**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화학물질·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 **How 어떻게**

-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빈도·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 **Why 왜**

-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평가시기 •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근로자 참여 제한 •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1. 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고시는 2023년 5월 23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② 이 고시의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이다.

③ 이 고시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내용 중 개정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 평가 목적 규정

② 평가 방법 다양화

③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④ 위험성 평가 결과전반을 근로자 에게 공유

3. 위험성평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규정

②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간편한 방법을 제시

③ 최초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④ 전체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협업을 강화

4.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유해. 위험요인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② 위험성이란 유해, 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③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5. 고시 제5조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은 수급인
④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6. 고시 제5조의 2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②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고시 제7조 사업주가 실시해야할 위험성 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②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③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④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시에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8. 고시 제7조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9. 고시 제16조 인정신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0. 고시 제2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사업장 컨설팅

②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③ 고시 제27조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11. 고시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위험성평가에 관해 할 수 있는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실시하는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12. 고시 제26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고시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② 고시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③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시 제27조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학습자료 | 위험성 평가 개요

1.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특징 요약

▶ (지속적인 과정)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임

▶ (법적 규정 준수)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토록 관리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참여)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유해요인과 필요한조치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 (조직 문화 강화)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음

▶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험성분석, 평가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과 훈련에 활용)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훈련되고 정기적인 교육에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비용 절감)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손실은 매우 큼. 위험성평가는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여 사업장의 손실비용을 줄여줌

2.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고시> 위험성과 유해·위험요인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

4. 2023 주요 변경내용

①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
②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
③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춤
④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⑤ 위험성평가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함
⑥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 위험성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핵심 중의 핵심은?
①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② "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근로자의 참여와 결과의 공유

1.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는 것

②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는 것

③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④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은 반드시 기록, 보존해야 한다.

2. 위험성 평가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 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한다.

②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③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④ 산업재해나 아차사고의 사례는 있는지

3. 위험성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훈련되고 정기적인 교육에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유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③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 유해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수행을 한다.

④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 사업장의 손실비용을 줄여준다.

4.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생명보호

②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성이 저하 방지

③ 기계 손상 등 사업주의 손해 방지

④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 생명보호의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계가 손상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어 사업주와 그의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위험성 평가 실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는 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6. 위험성 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

③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개선하는 과정

④ 위험성의 판단결정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 마련이행으로 이어지는 상시적 체계

7.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②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가 참여해야만 현장에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 제도이다.

③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등 전체 과정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다.

④ 외부 컨설팅 등은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행 가능성에 어려움이 따르는 개선 방식이다. 위험성평가에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이고 쉽고 간단한 개선 방식을 도출하여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8. 위험성 평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는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추가되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이 변화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결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과정이다.

② 위험성 평가는 그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위험성이 허용 가능할 때까지 줄이거나 위험성을 아예 제거하고자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③ 위험성 평가는 새롭게 추가되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이 변화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결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과정이다.

④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나서도 위험성은 남아 있게 마련이므로, 근로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을 통한 상시적 공유가 중요하다.

9. 위험성 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적인 과정

② 법적 규정 준수

③ 근로자의 참여

④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손실은 매우 크다. 위험성평가는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여 사업장의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다.

10.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이다.

③ 위험성 결정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 하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다.

11. 위험성평가 실시후 기록및 공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기록한다.

②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과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 방법을 기록한다.

③ 위험성평가 실시 후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다.

④ 기록들을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해야한다.

12. 위험성평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유해위험요인이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한다

②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③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한다.

④ 유해위험요인은 기계기구, 물질, 작업방식 등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는 한편, 위험성은 개선 조치를 실시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학습자료 | 위험성평가의 실시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①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급 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사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됩니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참고
(도급인의 의무)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됩니다.)

2. 위험성평가의 대상

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
②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된다.
③ 사업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아차사고
-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아차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 하인리히법칙(1:29:300법칙)
-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④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참여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④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⑤ 근로자들은 위험성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4.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의 방법에는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 강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 ·중·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있다.

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고 · 중 · 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나.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체크리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이므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 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다만,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 · 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다. 핵심요인 기술법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라.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활용)

● 빈도·강도법은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 기존에 5단계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을 도와주고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방법을 안내한다.

1.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① 사업주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 작업과 상관없는 모든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가 아니다.

2. 위험성평가 주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
보건관계자들,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야한다.
②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주,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들,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④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3. 도급 사업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도급 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수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③ 도급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및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④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4. 고시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 준수해야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해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5. 위험성 평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업무 중 근로자 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된 모든 유해위험요인
② 업무 중 근로자 에게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모든 유해위험요인
③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6. 아차사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② 아차사고는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③ 아차사고는 향후 얼마든지 그 유해·위험요인 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얼마든지 그 유해·위험요인 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아차사고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지게차로 파이프를 옮기던 도중 작업자를 치이게 할 뻔 한 사고
② 철근다발을 묶은 철선이 하중에 의해 풀리면서 근로자가 깔릴 뻔 한 사고
③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④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8.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1: 29: 300 법칙이라고도 한다.
② 300건의 무상해사고(아차사고)를 방치하면 29건의 경상이 발생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1건의 사망재해 사고로 이어진다.
③ 하인리히 법칙은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④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9. 고시 제6조 근로자 참여규정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③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④ 고시 제9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는 사업주의 책임이다.

10.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바로 그 작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③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위험성평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이다.
④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가능하다.

11.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위험에 직접 노출되므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한다.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므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③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④ 근로자들은 위험성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여부 확인에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12. 고시 제10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② 사업장 순회점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④ 설문조,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13.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하는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임시·수시·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② 근로자가 작업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업장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가 작업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더욱 높다.
③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한 반복작업
④ 아차사고는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학습자료 ‖ 위험성평가의 시기(상시평가 중심)

•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고, 두 가지 진행 방법이 있다. 하나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의 진행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평가-상시평가"의 진행 방법이다. 사업장에서는 공정이나 기계 · 물질의 변동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흐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시평가

●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평가

●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상시평가(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공정·기계·기구·물질 변화가 매우 커서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상시평가 체계도

월·주·일 단위 상시평가 체계
월(月):위험성평가
[사업주·근로자]
① 사업장 순회점검
② 상시적 제안제도
③ 아차사고 확인
전반적 위험요인 공유
주(週):공유·점검회의
[안전·보건담당자]
수급사업장 담당자 포함
유해·위험요인 논의
조치계획·결과 공유
공정·작업 위험요인 공유
일(日):TBM
[관리감독자·근로자]
작업 일정별
유해·위험요인 주지
주의·준수사항 전달
현장 위험요인 공유

1. 고시 제11조 위험성 결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주가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빈도강도법
② 체크리스트(Checklist)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위험성 수준을 상, 중 , 하 또는 고, 중, 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는 방법
② 위험성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③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의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므로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 시행 하여야한다.
위험성의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법이다.

4.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은 핵심요인 기술법이다.
② 위험성의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③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이므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 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④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 · 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5. 핵심요인 기술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이다.
②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용한다.
③ 사업주는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④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 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6. 고시 제15조에서 정한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위험성 평가
② 수시 위험성 평가
③ 정기 위험성 평가
④ 상시 위험성 평가

7. 고시 제15조에서 정한 위험성 평가 실시시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고시 제15조 제4항의 상시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 고시 제15조 제2항의 수시 위험성 평가과 제3항의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8. 최초 위험성평가시 사전준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② 평가시기 및 절차
③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④ 결과의 기록·보존

9.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②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③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④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여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의 내용이다.

10.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②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한 경우의 수시평가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중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1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② 최초 위험성 평가 이후 1년 이내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는 정기 위험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된다.

12. 상시평가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매월 위험성 평가 실시
② 매주 위험성 평가 실시
③ 매일 위험성 평가 실시
매 시간 위험성 평가 실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13. 상시 위험성 평가로 인정되기 위해서 고시 제15조 제4항이 반드시 이행해야할 사항으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②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③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
④ 고시 제15조 제4항이 정한 상시 위험성 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매주, 매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